

2026 대형 뮤지컬 낭독공연 지원사업 2차 공모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안정적인 제작 기반 조성 and 공연유통 환경 개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창작 뮤지컬을 발굴·육성하고자 「2026년 대형 뮤지컬 낭독공연 지원」 사업을 2차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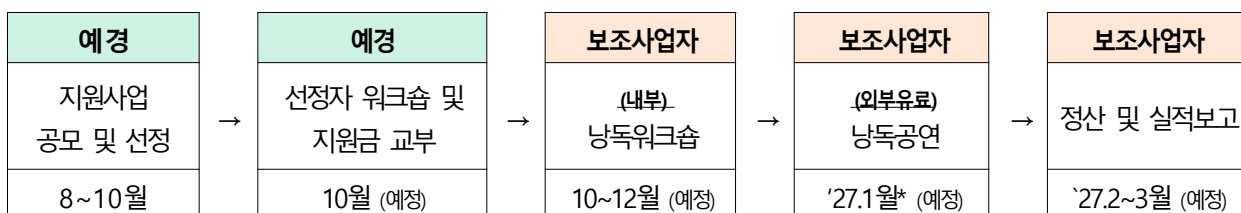
본 사업은 대극장 무대화를 목표로 하는 창작 뮤지컬의 개발 단계에서 낭독공연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와 시장성을 검증하고, 향후 본공연으로의 확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극장 규모의 신규 창작 뮤지컬 개발을 준비 중이거나, 우수 중소형 창작 뮤지컬의 대형화를 계획하고 있는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6 대형 뮤지컬 낭독공연 지원사업 2차 공모
- **사업목적** : 대형 창작 뮤지컬 육성 및 우수 중소형 뮤지컬의 대형화 지원을 위한 대극장 규모의 낭독공연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대극장 무대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 대형 창작 뮤지컬 혹은 우수 중소형 창작 뮤지컬 작품
 - ❖ **신규작품 개발** : 신청일 현재 유료 판매 기록이 없고, 당해연도 공연 예정이 없는 미 완성 뮤지컬 작품
 - ❖ **기존작품 대형화** : 신청일 현재 700석 이상 공연장에서 유료 판매 기록이 없고, 당 해연도 공연 예정이 없는 중소형 창작 뮤지컬 작품
 - *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창작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뮤지컬
- **지원규모** : 작품당 최대 1억원
- **지원내용** : 낭독공연을 위한 워크숍 및 제작비 일부 지원

2. 추진절차



*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극장 무대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 대형 창작 뮤지컬 혹은 우수 중소형 창작 뮤지컬 작품 ❖ 신규작품 개발: 신청일 현재 유료 판매 기록이 없고, 당해연도 공연 예정이 없는 미완성 뮤지컬 작품 ❖ 기존작품 대형화: 신청일 현재 700석 이상 공연장에서 유료 판매 기록이 없고, 당해연도 공연 예정이 없는 중소형 창작 뮤지컬 작품 *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창작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뮤지컬 * 「대형 뮤지컬 낭독공연 지원(2차) 공모」 지원 제외대상 -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하지 못한 작품 - 700석 이상 공연장에서 유료 공연화 된 작품 - 심사위원단에서 공연화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대형 창작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작품 - 대형 뮤지컬 낭독공연 지원 사업 1차 공모('26.3월~5월) 제출 작품(선정 및 미선정 작품 전체)
신청대상	대형 창작 뮤지컬 신규 개발¹ 또는 우수 중소형 창작 뮤지컬을 대형화 개발² 중인 뮤지컬 기획·제작사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티켓 유료 판매 가능한 기획·제작사 * 신청 주체와 창작자 및 원작자 간 작품 저작권에 대한 계약 및 지분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청 주체가 해결해야 함
지원 제외대상	-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700석 이상 공연장에서 유료 공연된 작품 - 심사위원단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대형 창작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작품 - 대형 뮤지컬 낭독공연 지원 사업 1차 공모('26.3월~5월) 제출 작품(선정 및 미선정 작품 전체)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당해연도 지원사업 중 지원금 1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3개 이상 수행 단체 - 당해연도에 지원사업의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으로 정부 및 국내 지원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공연작품) - 기획재정부「보조금법」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예경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능한 기관 •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 • 학교(초·중·고·대학생)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아마추어 단체 포함) •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지원확정 후에도 지원 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가능
--	---

4. 지원내용

지원규모	• 작품당 최대 1억원 * 총사업비 기준 자부담금 10% 이상 편성 필수 (총사업비=보조금 90%+자부담금10%) ① 자부담금 전액 우선 소진 필수, 2차 교부 이전까지 자부담금 미소진 시 2차 교부 불가 ② 자부담금 이내 수익금은 자체 활용 가능. 단, 자부담금 초과 수익금의 50%는 이자와 함께 국고 반납 필수																										
지원내용	• 낭독공연을 위한 워크숍 및 제작비 일부 지원 • 지원금 및 자부담금 사용 가능 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목</th><th>세목</th><th>보조금</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5">①운영비 (210)</td><td>일반수용비 (01)</td><td> - 전문가활용비(연출·배우·연주자 등 창작진, 기술 및 진행 인력 등) - 홍보·마케팅비(리플렛, 현수막, SNS광고비 등) - 원작 저작권료(로열티 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필수) - 물품운송비 </td><td></td></tr> <tr> <td>공공요금 및 제세(02)</td><td> - 상해보험료(필수) - 예술인 산재보험료(필수) </td><td>* 사업참여자 가입 필수</td></tr> <tr> <td>임차료 (07)</td><td> - 연습공간 임차료 - 공연장 임차료 - 장비 임차료 - 약기 대여료 </td><td>* 신청주체 소유·관리 연습공간 임차료는 지급 불가</td></tr> <tr> <td>복리후생비 (12)</td><td> - 예술인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분)(필수) </td><td>* 작품 활동기간 산정하여 사업주 부담분 납부</td></tr> <tr> <td>일반용역비 (14)</td><td> - 조명 용역비 - 음향 용역비 - 무대 용역비 - 티켓/홍보/마케팅 용역비 - 소품 제작 용역비 </td><td>* 소모성 공연소품 외 신규 무대 및 소품, 의상 제작비 편성 불가</td></tr> <tr> <td>②여비 (220)</td><td>국내여비 (01)</td><td> - 숙박비 - 교통비 </td><td>* 공무원 여비 기준 준수</td></tr> </tbody> </table>			목	세목	보조금	비고	①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전문가활용비(연출·배우·연주자 등 창작진, 기술 및 진행 인력 등) - 홍보·마케팅비(리플렛, 현수막, SNS광고비 등) - 원작 저작권료(로열티 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필수) - 물품운송비		공공요금 및 제세(02)	- 상해보험료(필수) - 예술인 산재보험료(필수)	* 사업참여자 가입 필수	임차료 (07)	- 연습공간 임차료 - 공연장 임차료 - 장비 임차료 - 약기 대여료	* 신청주체 소유·관리 연습공간 임차료는 지급 불가	복리후생비 (12)	- 예술인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분)(필수)	* 작품 활동기간 산정하여 사업주 부담분 납부	일반용역비 (14)	- 조명 용역비 - 음향 용역비 - 무대 용역비 - 티켓/홍보/마케팅 용역비 - 소품 제작 용역비	* 소모성 공연소품 외 신규 무대 및 소품, 의상 제작비 편성 불가	②여비 (220)	국내여비 (01)	- 숙박비 -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기준 준수
목	세목	보조금	비고																								
①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전문가활용비(연출·배우·연주자 등 창작진, 기술 및 진행 인력 등) - 홍보·마케팅비(리플렛, 현수막, SNS광고비 등) - 원작 저작권료(로열티 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필수) - 물품운송비																									
	공공요금 및 제세(02)	- 상해보험료(필수) - 예술인 산재보험료(필수)	* 사업참여자 가입 필수																								
	임차료 (07)	- 연습공간 임차료 - 공연장 임차료 - 장비 임차료 - 약기 대여료	* 신청주체 소유·관리 연습공간 임차료는 지급 불가																								
	복리후생비 (12)	- 예술인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분)(필수)	* 작품 활동기간 산정하여 사업주 부담분 납부																								
	일반용역비 (14)	- 조명 용역비 - 음향 용역비 - 무대 용역비 - 티켓/홍보/마케팅 용역비 - 소품 제작 용역비	* 소모성 공연소품 외 신규 무대 및 소품, 의상 제작비 편성 불가																								
②여비 (220)	국내여비 (01)	- 숙박비 -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기준 준수																								

	* 사회적 약자 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생산물 등) 구매 권장 * 회계 검증 수수료 단가 (이외의 예산은 추후 협의) <table><tr><th>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th><th>회계검증수수료(원) *부가세 포함</th></tr><tr><td>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td><td>328,000</td></tr><tr><td>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td><td>389,000</td></tr><tr><td>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td><td>422,000</td></tr><tr><td>4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td><td>585,000</td></tr><tr><td>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td><td>633,000</td></tr><tr><td>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td><td>683,000</td></tr><tr><td>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td><td>731,000</td></tr><tr><td>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td><td>779,000</td></tr><tr><td>1억원이상 2억원미만</td><td>982,000</td></tr></table> * 상기 예산 편성 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술경영지원센터 협의 및 승인 후 편성, 변경, 집행 가능 * 공연단체의 작품 관련 정보(예산, 참여자 등)는 국회 등에서 정보 제출 요구 시 상시 공개될 수 있음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	회계검증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28,000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89,000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422,000	4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85,000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633,000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683,000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731,000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779,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982,000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	회계검증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28,000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89,000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422,000																				
4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85,000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633,000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683,000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731,000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779,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982,000																				
간접 지원	• 낭독공연 통합 홍보마케팅 진행 • 관람객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모니터링 피드백 지원																				
지원조건 및 필수이행사항	• 낭독공연 운영 조건: 사업기간 내 총 2회의 직접 대관을 통한 낭독공연 개최 필수 * 이 중 1회 이상은 일반 관객 대상 유료 공개 낭독공연으로 진행 ❖ 유료 공개 낭독공연: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정하는 기간(27년 1월 중) 내 300석 이상 공연장에서 유료 티켓 판매(정가 1만원 이상) 필요 * 지정 기간 외 유료 공개 낭독공연 운영 필요 시, 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 * 티켓 할인 및 초청 운영 기준, 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 ❖ 구성 기준: 40분 이상 공연 구성 및 주요 배역(주연, 조연, 앙상블) 참여, 라이브 앙상블 연주 필수 ❖ 공모 신청 시 해당 작품이 대형 창작 뮤지컬로 확장 가능한 규모와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 실적 관리 및 데이터 증빙: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 및 데이터 제공 의무화 ❖ 모니터링: 관객 만족도조사 및 전문가 모니터링 참여 필수 ❖ 결과 환류: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 개발 방향 및 개선사항 도출 후 중장기 작품 개발 계획 반영 필요 ❖ 데이터 제공: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집계 가능한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 시스템 이용 필수 * 낭독공연별 티켓판매 실적은 KOPIS 공연별 통계에서 공개 예정 • 중장기 계획 수립: 단발성 낭독공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고도화 과정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출 ❖ 개발 로드맵: 당해연도 성과를 반영한 '중장기 작품 개발 로드맵' 제출, 향후 시범 공연 지원신청 시 계획 대비 실행 여부 검토 예정																				

	• 통합 홍보 협조: K-뮤지컬 낭독·시범공연 통합 홍보 협조 필수 ❖ 홍보자료 제공: 공연단체 및 작품 소개, 창·제작진 정보, 공연 관련 사진·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기한 내 제공 ❖ 브랜딩 적용 및 채널 연계: 지정된 키비주얼, 로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시 적용 필수, 공연단체 보유 온·오프라인 채널(SNS 등)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게시 및 확산 협조
	• 행정 준수: 공공 지원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및 지침 준수 ❖ 보조금 관리: e나라도움(www.bojo.or.kr) 시스템을 통한 지원금 집행·정산 필수 ❖ 표준계약 및 고용보험 가입: 참여 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활용한 서면 계약 체결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상해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 기간 내 참여 인력 전원 대상 상해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5.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6년 8월 18일(화) ~ 9월 8일(화) 14:00까지 (기한엄수) * 접수 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완료 바람
제출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공모 신청 시 신청 사업명 「(작품명) 2026 대형 뮤지컬 낭독공연 지원 2차 공모」 입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주체의 이력 등 정보 현행화 후 신청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 마감 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
필수제출자료	① 공모신청서 1부 (지정양식: HWP 형식) ② 예산집행계획서 1부 (지정양식: Excel 형식) ③ 핵심 참가자(창·제작진 및 주요 출연진) 참여 동의서 (지정양식: HWP 형식) ④ 전막대본(PDF) ⑤ 주요넘버 포함 악보(PDF) 및 주요넘버 포함 음원(mp3, wav) 파일 * 드라마, 음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 녹음(육성) 권장 ⑥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선택제출자료	① 작품소개자료 및 단체/제작사 소개서 (10매 이내, 자유 양식) ② 국내외 활동 증빙자료 (5매 이내, 자유양식) ③ 국내협력처(공연장, 투자사 등) 소개서 (10매 이내, 자유 양식) ④ 저작권 계약서

6. 심사 및 결과발표

심사일정	• 2026년 9월 3주~10월 1주 중 (예정) ❖ 서류심사: 2026년 9월 3주 ~ 4주 중 (예정) ❖ 발표심사: 2026년 9월 5주 ~ 10월 1주 중 (예정)
심사방법	• 적격여부 등 행정검토 • 뮤지컬 전문가 7인 내외의 서류 심사

	❖ 서류심: 중장기 작품 개발 계획서 등 공모신청 서류심 ❖ 발표심: 서류심에서 선정된 작품 대상 예산 편성에 대한 정당성, 필요성 등 대형 작품 개발 계획 발표 심의			
심사기준	• 작품개발 준비도 30점, 작품경쟁력 30점, 사업추진 계획의 타당성 20점, 신청단체 역량 20점			
	심의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작품 개발 준비도 (30)	시장분석 및 개발 목표의 명확성/ 작품 개발 준비 수준	- 한국 및 글로벌 뮤지컬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개발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대형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 음악, 구성 등 작품 개발이 충분히 진행되어 낭독공연을 통한 검증이 가능한 단계인가?	10
		중장기 제작 및 유통 계획	- 낭독공연 이후 제작, 초연, 유통(투자유치, 공연장 확보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0
		대극장 진입 전략	- 낭독공연을 통해 작품을 어떻게 개선하고 대극장 제작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전략이 명확한가?	10
	작품 경쟁력 (30)	작품의 독창성 및 차별성/ 시장 경쟁력 및 확장 가능성	- 작품의 소재, 서사, 음악 등이 독창적이며 기존 뮤지컬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 작품이 국내외 주요시장에서 공연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 공연 콘텐츠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가?	10
		창·제작진 전문성	- 작가, 작곡가, 연출, 제작자 등 주요 창·제작진이 대형 뮤지컬 개발에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10
		낭독공연 구성의 적절성	- 낭독공연을 위한 주요 출연진 및 창작진 구성이 작품의 개발 목적에 적합한가?	10
	사업추진 계획의 타당성 (20)	낭독공연 개발 및 운영계획	- 낭독공연을 위한 워크숍, 리허설, 공연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10
		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 일정이 합리적이며, 예산 편성과 산출 근거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10
	신청단체 역량 (20)	제작 수행 역량	- 신청단체가 뮤지컬 제작 및 공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10
		협력 네트워크 및 사업 추진체계	- 공연장, 투자사 등 협력 파트너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 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10
결과발표	• 2026년 10월 2~4주(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선정작품 개별 안내			

7. 유의사항

- 「2026 대형 뮤지컬 낭독공연 지원」 1차 공모(26.3월~5월)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작품은 본 공모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작품 선정 이후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작품을 신청할 경우 작품별 별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안내 및 문의

- **(NCAS 사용문의)** NCAS 고객센터 1577-8751
- **(신청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뮤지컬지원TF
 - 이메일 : musical@gokams.or.kr
 - 전 화 : 02-708-2230/2287/2278